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명확히 하여 교육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교육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, 교육 이수증에 교육 유효기간 및 차기 교육 안내사항을 신규로 기재하여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며,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건설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미지급하는 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한편,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”을 “법 제30조제4항”으로, 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”을 “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그 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
2.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

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“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”를 “날부터 직전 12개월 이내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

1. 성명 :
2. 생년월일 :
3. 교육종류 : [] 신규교육, [] 보수교육
4. 교육기간 : . . . ~ . . . (시간)
5. 유효기간 : . . . ~ . . . (시간)

※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위 사람은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장 직인

안내사항

1. 교육종류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란에 정확히 체크(✓)하여야 합니다.
2.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금번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0000.00.00 ~ 0000.00.00이므로, 차기 보수교육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<u>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(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)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~ ⑤ (생략)	제13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0조제4항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이 다음</u> <u>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</u> <u>그 사람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</u> 2. <u>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의2(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)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	제13조의2(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) ① ----- ----- -----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받아야 한다. 1. (생 략) 2.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<u>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</u> <u>까지를 말한다</u>) ② ~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 <u>날부터 직전 12개월 이내</u> <u>를 말한다</u>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